

제10장
지식재산

제1절
일반규정

제10.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나. 특허 및 실용신안
- 다. 상표
- 라. 산업디자인
- 마.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반도체 지형학)
- 바. 지리적 표시
- 사. 식물품종, 그리고
- 아. 미공개 정보의 보호

국민이란 관련 권리에 관하여, 제10.5조에 열거된 협정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보호를 위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게 될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말한다.

제10.2조

목적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은 기술 지식 생산자와 사용자의 상호 이익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무역, 투자 및 기술 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확산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제10.3조

원칙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것 또는 무역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기술의 국제적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과 합치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공중 보건과 영양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의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제10.4조

의무의 성격 및 적용범위

각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또는 집행을 자국의 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집행은 이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제도와 관행 내에서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제10.5조 국제 협정

양 당사국은 다음의 다자 협정에 규정된 양국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 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 나. 1970년 6월 19일 채택되고 2001년 10월 3일 수정된 「특허협력조약」
- 다. 1883년 3월 20일 채택되고 1979년 9월 28일 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이하 “파리 협약” 이라 한다)
- 라. 1886년 9월 9일 채택되고 1971년 7월 24일 개정된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이하 “베른협약” 이라 한다)
- 마. 1989년 6월 27일 채택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 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이하 “WPPT” 라 한다)
- 사. 1961년 10월 26일 채택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이하 “로마협약” 이라 한다)
- 아.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이하 “WCT” 라 한다)

- 자. 1977년 4월 28일 채택되고 1980년 9월 26일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차. 2013년 6월 27일 채택된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이하 “마라케시 조약” 이라 한다), 그리고
- 카. 1991년 3월 19일 채택된 「식물신품중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10.6조

지식재산과 공중보건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하 “도하 선언” 이라 한다)에서 수립된 원칙을 인정하고 이 장의 규정이 도하 선언과 무관함을 확인한다.

제10.7조

내국민 대우

1.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¹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2.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1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탈은

¹ 이 항의 목적상,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체적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용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그리고 (2) 제10.43조에 규정된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 금지와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의무

가. 이 장에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해야 한다. 그리고

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제1항은 지식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 주관하에 체결된 다자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8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자국의 법과 규정을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제도와 관행에 따라 일반 대중이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히 그리고 식물품종권리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또한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의 확인을 지원하는 등록 지식재산권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 자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정보가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제10.9조

기존의 대상물 및 이전의 행위에 대한 이 장의 적용

1.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은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날짜에 보호되고 있거나, 제3자의 공정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함이 없이 이 장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후에 충족하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2. 이 장에서 규정되지 않는 한,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제10.10조 지식재산권의 소진

당사국이 회원인 국제 협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소진을 다루는 규정과 무관하게,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법 제도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소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또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2절 협력

제10.11조 협력 활동 및 이니셔티브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각 지식재산부서 또는 각 당사국이 결정하는 그 밖의 기관 간의 적절한 조정, 훈련 및 정보교환 같은 것을 통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인 대상물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활동 및 이니셔티브는 양 당사국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하고, 당사국의 요청 및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국내 및 국제 지식재산 정책의 개발
- 나. 특허 심사의 질과 효율성
- 다. 지식재산 행정 및 등록 시스템

- 라. 지식재산 관련 교육 및 인식
- 마. 다음과 관련된 지식재산 사안
 - 1) 중소기업
 - 2)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
 - 3) 기술의 창출, 이전 및 확산, 그리고
 - 4) 여성과 청년의 역량 증진
- 바. 연구, 혁신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
- 사. 세계지식재산기구 주관 하에 체결되거나 운영되는 것과 같은 다자 지식재산 협정의 이행
- 아. 역량 배양
- 자. 지식재산권의 집행, 그리고
- 차. 양 당사국 간 상호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활동과 이니셔티브

제3절

상표

제10.12조

상표 등록이 가능한 표지의 유형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냄새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표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설명 또는 시각적 표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13조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증명표장이 보호되는 한, 이를 자국의 법에서 별도의 범주로 취급할 의무가 없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지가 자국의 상표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0.14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의 사용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 3 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10.15조

예외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10.16조

유명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표장이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할 수 없다.

가. 등록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2. 파리협약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²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산업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 동맹 총회와 1999년 9월 20일부터 29일 까지 개최된 제34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유명상표의 보호 규정에 관한 공동 권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³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선행 유명 상표와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² 상표가 당사국에서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당사국은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³ 양 당사국은 유명 상표가 최초로 언급된 상표에 대한 출원, 등록 또는 사용 전에,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 이미 유명했던 상표임을 양해한다.

제10.17조

악의적 상표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다.

제10.18조

상표의 심사, 이의제기 및 취소의 절차적 측면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나. 출원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상표 등록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 상표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등록된 상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리고
- 라.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행정적 결정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 이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제10.19조

전자적 상표제도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 전자적 처리 및 유지를 위한 제도, 그리고
- 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된 상표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정보 시스템

제10.20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각 당사국은 1957년 6월 15일 니스에서 체결되고 수정 및 개정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이하 “니스 분류”라 한다)에 합치하는 상표 분류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니스 분류⁴에 의하여 설정된 류별로 분류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그 명칭으로 표시하는 출원의 등록 및 공표, 그리고
- 나. 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동일한 류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역으로,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다른 류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10.21조

상표의 보호 기간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⁴ 니스 분류의 번역본에 의존하는 당사국은 발표 및 공표된 공식 번역본의 한도에서 니스 분류의 최신 버전을 따른다.

제10.22조
사용권의 비등록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사용권의 유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는
- 나.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이 상표의 취득, 유지 또는 집행과 관련된 절차에서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으로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0.23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1.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ccTLD)의 도메인이름 관리를 위한 각 당사국의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이 이용 가능하다.

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승인한 대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초하거나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진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다음의 절차

- 1)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 2)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
- 3)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절차, 그리고
- 4) 사법 절차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절차

나.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관리자 정책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관한 연락처의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상 대중의 접근, 그리고

다. 최소한 어떠한 인이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 의도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⁵

2.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서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저작권 침해 자료의 배포로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3. 각 당사국은 관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체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10.24조 국가명

각 당사국은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당사국의 국가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제4절 지리적 표시

제10.25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⁵ 양 당사국은 그러한 구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취하, 취소, 이전, 손해배상 또는 구제명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음을 양해한다.

1.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2. 양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가 상표 또는 독자적 제도 또는 그 밖의 법적 수단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제10.26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

각 당사국은 상표 또는 독자적 제도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또는 인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등록에 대한 출원 또는 인정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그러한 출원 또는 요청의 제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과 규정이 대중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제10.27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일

당사국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 그 보호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에서의 출원일⁶ 또는 등록일 이후 개시된다.

제5절

특허

제10.28조

특허 가능 대상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출원일은, 적용 가능한 경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 출원일을 포함한다.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만 한다.⁷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⁸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적, 치료적 및 외과적 방법

제10.29조

공지 예외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⁹ 등록 출원과 관련된 발명의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 발명가, 출원인 또는 자국 영역의 안 또는 밖에서 발명가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인에 의하여 실시된 경우, 그리고

나. 출원일 전 최소한 12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⁷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이라는 용어를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과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다.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7조와 합치되는 특허대상에 대한 예외를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는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30조

특허의 심사, 이의제기 및 무효의 절차적 측면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특허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 가. 특허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나. 출원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특허 등록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 이해당사자가 등록된 특허의 취소 또는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그리고
- 라. 이의제기, 취소 또는 무효화 절차에서의 결정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 이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제10.31조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1. 각 당사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특허권자에게 등록 후 보정 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그러한 보정 또는 정정은 특허권 전체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¹⁰

¹⁰ 권리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보정 또는 정정은 특허권의 범위가 종전과 같거나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0.32조

예외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6절

미공개 실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보호

제10.33조

의약품에 대한 미공개 실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보호

1.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을 위한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또는 모두에 관하여 미공개 실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제3자가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¹¹ 제품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신규 의약품의 시판허가일부터 최소 5년간 시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 그 정보, 또는

나. 그러한 정보를 제출한 인에게 부여된 시판허가

2. 당사국은 특허권자 또는 시판허가 신청자가 규제 당국에 제출한 특허정보에 기초하여,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의약품에 대하여 주장되는 특허의 적

¹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의 목적상, 그러한 유사한 의약품의 시판허가, 또는 그 대안으로서, 그러한 허가에 대한 출원인의 요청이 이전에 승인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미공개 실험 또는 그 밖의 자료에 기초하거나 그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이전 허가에 기초하는 경우, 그 의약품은 이전에 승인 받은 의약품과 “유사” 하다.

용대상인 그 의약품의 시판을 구하는 제3자에게 시판허가의 발급을 배제하는, 사법절차를 제외한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따라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도하 선언

나. 도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들에 의하여 부여되었으며 양 당사국 간 발효 중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대한 면제, 또는

다. 양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게 되는, 도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

4. 제1항의 목적상, 신규 의약품이란 동일한 유효성분을 함유한 다른 의약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시판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그러한 유효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말한다.

제7절 산업디자인

제10.34조 산업디자인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물품의 일부(들)를 포함한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자국의 국내법에서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확보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요건이 그러한 보호를 획득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기회를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등록된 산업 디자인의 이용 가능한 보호 기간은 출원일부터 최소 20년에 달한다.

제10.35조

산업디자인의 심사, 이의제기 및 무효의 절차적 측면

각 당사국은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산업디자인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 가. 산업디자인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나. 출원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산업디자인 등록에 대한 최종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 이해당사자가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취소 또는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그리고
- 라. 이의제기, 취소 또는 무효화 절차에서의 결정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 이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제10.36조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각 당사국은 산업디자인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등록 전 보정, 정정 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제10.37조

공지 예외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과 관련된 디자인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 가. 창작자, 출원인 또는 자국 영역의 안 또는 밖에서 창작자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인에 의하여 실시된 경우, 그리고
- 나. 출원일 전 최소한 12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제10.38조

예외

당사국은 산업디자인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산업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8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0.39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양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 가. 로마협약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 나. 베른협약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다. WCT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그리고

라. WPPT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제10.40조 제한 및 예외

1. 이 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베른협약, WCT 또는 WPPT 에 의하여 허용되는 제한 및 예외의 적용가능성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

제10.41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도의 균형

각 당사국은 비판, 논평, 뉴스 보도, 수업·학문·연구와 그 밖의 유사한 목적과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적절히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제10.40조와 합치되는 제한 또는 예외의 수단을 통하여(디지털 환경을 위한 것을 포함한다) 자국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도에서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¹²

제10.42조 계약에 의한 이전

¹² 마라케시 조약에서 인정된 바와 같다.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 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 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제10.43조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에 관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해당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해서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¹³를 권한 없이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인으로부터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제10.44조

집중관리

¹³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대중 전달이나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대중 전달 또는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음 정보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저작물· 저작자· 저작물에 관한 권리자 또는 실연자· 실연자의 실연· 음반 제작자· 음반, 실연이나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기록의 유지 및 보고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행을 기초로 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위한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인정한다.

제10.45조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저작자·출판자·실연자·제작자 또는 방송국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이름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제9절

집행

제10.46조

집행상 일반 의무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합치되게 각국의 법에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침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는 구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절에 명시된 집행절차가 자국의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절차는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의 설치를 피하고 그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¹⁴

¹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이 절에 규정된 집행절차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그리고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한도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3.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다.¹⁵

제10.47조

국경 조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제4절의 규정에 따라,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수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권리자가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그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정지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제4절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그 밖의 침해와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 침해상품의 관세 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에 관하여 상응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¹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는 법령, 지침, 정책, 인식 캠페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